가산금 및 가산세의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운영

종전 내용	달라지는 내용	시행시기
● 가산금과 중가산금 - 가산금 : 납기경과 후 3% - 중가산금 : 본세 30만원 이상 매달 0.75%씩 최대 60개월 부과	●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- 가산금 및 가산세가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 (산출방법은 기존과 동일)	2021. 1. 1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,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·제4항

징수유예의 종류, 요건 및 절차의 명확화

종전 내용	달라지는 내용	시행시기
● 종류, 요건 미분류 -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징수유예 결정	● 납기 전 징수유예와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로 분류 - 납기 시작 전 징수유예 신청 -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-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 통지	2021. 1. 1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25조의2 제25조의3

부부 공유 동산 및 유가증권의 압류

종전 내용	달라지는 내용	시행시기
● 동산·유가증권의 압류 - 〈신설〉 -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유자에게 매각결정 통보	● 동산·유가증권의 압류 -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배우자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 - 부부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공매재산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 가능	2021. 1. 1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48조의1 제48조의2 제89조의1 제89조의2 제89조의3

● 소관부서 : 징수과 (☎ 8024-2511)

카카오페이를 이용한 세금 납부

종전 내용	달라지는 내용	시행시기
● 금융기관 싸이트 접속 및 가상계좌 입력 통해 세금 납부 - 〈신설〉	●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카카오페이 결제 가능 - 카카오플러스친구 '평택시 지방세 알리미'를 통해 카카오페이 결제 가능한 알림톡 발송	2021. 1월 중

● 소관부서 : 세정과 (☎ 8024-2311)

다주택자, 법인 주택 취득세율 강화

종전 내용	달라지는 내용	시행시기
● (기존)취득세 구간별 세율 기존 개인 1주택 / 2주택 / 3주택 / 4주택이상 / 법인 주택 가액에 따라 1~3%	● 다주택자 및 법인 취득세율 강화 개정 개인 1주택 / 2주택 / 3주택 / 법인 주택 가액에 따라 1~3% / 8% / 12%	2021. 1. 1. 「지방세법」 제13조의2 제13조의3

● 소관부서 : 세정과 (☎ 8024-2321)

주민세 과세체계 개편

종전 내용	달라지는 내용	시행시기
● 주민세 세목명 변경(전) - 균등분(개인균등, 개인사업, 법인균등) - 재산분 - 종업원분 ● 주민세 (재산분) 납기(전) -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 납부	● 주민세 세목명 변경(후) - 개인분(기존 개인균등분) - 사업소분 ☞ 재산분+사업장분 주민세(개인+법인) - 종업원분 ● 주민세(사업소분) 납기(후) -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	2021. 1. 1. 「지방세법」 제74조 ~ 제78조 제81조, 제83조

● 소관부서 : 세정과 (☎ 8024-2334)

외국법인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반영

종전 내용	달라지는 내용	시행시기
● 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액 포함 범위 - 〈신설〉	● 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액 포함 범위 (개선) -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개정	2021. 1. 1.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19

● 소관부서 : 세정과 (☎ 8024-2332)

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변경

종전 내용	달라지는 내용	시행시기
●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- 개산방법 : 연세액의 10% - 이자율 : 10%	● 자동차세 공제 방법 - 개산방법 : 연세액 * 334/365 * 10% - 이자율: 10% ☞ 1월 납부기한(31일)을 공제기간에서 제외	2021. 1. 1. 「지방세법」 제128조제3항 및 제4항

● 소관부서 : 세정과 (☎ 8024-2335)

주택분 재산세 세율 인하

종전 내용	달라지는 내용	시행시기
● 주택가격, 주택보유수에 상관없이 주택별로 재산세 세율 적용	●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.05% 인하	2021. 1. 1. 「지방세법」 제111조의2

과세표준	당초세율
6천만원 이하	0.10%
1.5억 이하	6만원+ 6천만초과금액의 0.15%
3억 이하	19.5만원+ 1.5억 초과금액의 0.25%
3억 초과	57만원+ 3억초과금액의 0.4%

과세표준	변경세율
6천만원 이하	0.05%
1.5억 이하	3만원+ 6천만초과금액의 0.10%
3억 이하	12만원+ 1.5억 초과금액의 0.20%
3억 초과	42만원+ 3억초과금액의 0.35%

● 소관부서 : 세정과 (☎ 8024-2343)

일반행정 분야

온라인 여권 재발급서비스 시행

● 변경내용 : [정부24]를 통한 온라인 여권재발급 서비스 시행
- '정부24'(http://www.gov.kr)에 로그인하여 직접 여권사진을 업로드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여권 신청
- 여권을 수령하러 창구에 방문하여 본인확인(지문 및 안면인식)을 거쳐 여권 수령

● 신청대상 :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
● 관련근거 : 「여권법시행령」제5조제2항
● 시 행 일 : 2020. 12. 18.
● 소관부서 : 민원행정과 (☎ 8024-2821)

주민등록번호(뒷자리) 없는 여권 발급

● 변경내용
- 여권분실 등을 통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여권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는「여권법」개정에 따라 2020. 2 .21. 부터 주민등록(뒷자리) 번호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이 발급됨.
-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, 전국의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 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

※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

● 관련근거 : 「여권법」제15조
● 시 행 일 : 2020. 12. 21.
● 소관부서 : 민원행정과 (☎ 8024-2821)

가족관계등록사항별 특정증명서 발급서비스 확대 시행

● 내용 : 12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신규 특정증명서 8종이 추가되어 총 20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가 발급 가능

※ 특정증명서 : 불필요한 개인정보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사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

기존 12종	신규 8종
- 가족관계증명서(일반) 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- 가족관계증명서(특정)
- 기본증명서(일반) - 기본증명서(상세) - 기본증명서(특정-친권·미성년후견 현재)	- 기본증명서(특정-출생·사망·실종) - 기본증명서(특정-개명·성본변경) - 기본증명서(특정-성별정정) - 기본증명서(특정-인지·친생자관계정정) - 기본증명서(특정-친권·미성년후견 전부)
- 혼인관계증명서(일반) -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- 혼인관계증명서(특정)
- 입양관계증명서(일반) - 입양관계증명서(상세)	
-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(일반) -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(상세)	
-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	

● 관련근거 :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14조제5항 및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일부개정 제21조의2
● 시 행 일 : 2020. 12. 28.
● 소관부서 : 민원행정과 (☎ 8024-2871)

전입신고 사실 및 세대주 변경 통보서비스 시행

● 변경내용
- 세대주, 소유자·임대인에게 그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 통보

※ 세대주나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, 임대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거주지를 신거주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받을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세대주,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

-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세대주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

※ 정정신고의 내용이 세대주의 변경인 경우로서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통보해 줄 것을 변경 전 세대주가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

● 관련근거 : 「주민등록법」제16조의2,「주민등록법」시행령 제20조
● 시 행 일 : 2020. 12. 10.
● 소관부서 : 민원행정과 (☎ 8024-2865)

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

종전	변경	시행시기
● 국가유공자 등과 유족(선순위자)이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	●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(선순위자만 해당하되,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)이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● 출생신고 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	2021. 3. 2.

● 관련근거 :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」
● 소관부서 : 민원행정과 (☎ 8024-2865)

상수도요금 감면 확대 및 규제사항 개선

구분	종전	변경(2020. 11월부터)
상수도 요금감면 확대	● 평택시 수도급수조례」 시행규칙 제24조 - 기초생활수급자 ⇒10톤, - 장애인·국가보훈대상자·다자녀가구 ⇒ 5톤	● 「평택시 수도급수 조례」 제35조제1항 제7호의 복지대상 세대의 수도요금 확대 감면 ☞ 사용량을 10톤으로 상향 일괄 조정 (최대 5,500원 감면)
상수도 요금 분할납부	● 〈신설〉	●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」제27조제4항 수도요금이 과다한 경우 분할 납부 가능 ☞ 과다한 수도의 사용, 누수, 미납 등으로 부과된 수도요금이 직전 평균 사용량의 2배 이상이면서, 전월대비 30만원을 초과한 자는 수도요금을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.
상수도 요금 수수료	● 「평택시 수도급수 조례」 제33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- 40미리미터 미만 2,000원 - 40미리미터 이상 4,000원	● 「평택시 수도급수 조례」제38조제2항 수도요금 체납 후 수도공급 재개를 위한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폐지

● 관련근거 : 「평택시 수도급수 조례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
● 시 행 일 : 2020. 11월 고지분부터 적용
● 소관부서 :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(☎ 8024-5147)

푸른하늘 맑은평택

2021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!

2021년 달라지는 제도 소개

사회복지

보건

환경·위생

세정

일반행정

평택시

Contents

1 사회복지분야
- 청년 월세 지원 사업
-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및 지급 기준
- 장애인연금 주요 변경 사항
-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완화
- 기초연금 주요 변경 사항
-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
-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
-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
-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
2 보건분야
- 경증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AI스피커 지원 사업
- 치매 검사비 지원 사업
- 치매 조호물품 지원 사업

3 환경·위생분야
- 신규 식품영업자 집합교육 의무화

4 세정분야
-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준 변경
-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기간 변경
- 고액·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
- 가산금 및 가산세의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운영
- 징수유예의 종류, 요건 및 절차의 명확화
- 부부 공유 동산 및 유가증권 압류
-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세금 납부
- 다주택자, 법인 주택 취득세율 강화
-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
- 외국법인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반영
-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변경
- 주택분 재산세 세율 인하

5 일반행정분야
- 온라인 여권 재발급서비스 시행
- 주민등록번호(뒷자리) 없는 여권 발급
- 가족관계등록사항별 특정증명서 발급서비스 확대 시행
- 전입신고 사실 및 세대주 변경 통보서비스 시행
-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
- 상하수도요금 감면 확대 및 규제사항 개선

사회복지 분야

청년 월세 지원 사업(신설)

- **신청기간** : 2021. 3월 중 ※ 시 홈페이지 공고
- **지원기간** : 2021. 6월 ~ 12월
- **지원대상** : 만19세 ~ 39세 청년 1인 가구(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평택시 거주)
- **사 업 량** : 50명
- **지원자격** : (소득)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  (거주)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,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자
- **지원내용** : 월 20만원 월세 지원 (최대 12개월 / 생애 1회)
- **신청방법** 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- **관련근거** : 「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」제14조
- **소관부서** : 복지정책과 (☎ 8024-3077)

맞춤형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지급 기준

- 기준 중위소득

(단위 : 원)

가구원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
2020년	1,757,194	2,991,980	3,870,577	4,749,174	5,627,771	6,506,368	7,389,715
2021년	1,827,831	3,088,079	3,983,950	4,876,290	5,757,373	6,628,603	7,497,198

- 급여종류별 선정기준

(단위 : 원)

구분	연도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
생계급여 (30%)	2020	527,158	897,594	1,161,173	1,424,752	1,688,331	1,951,910	2,216,915
	2021	548,349	926,424	1,195,185	1,462,887	1,727,212	1,988,581	2,249,159
의료급여 (40%)	2020	702,878	1,196,792	1,548,231	1,899,670	2,251,108	2,602,547	2,955,886
	2021	731,132	1,235,232	1,593,580	1,950,516	2,302,949	2,651,441	2,998,879
주거급여 (45%)	2020	790,737	1,346,391	1,741,760	2,137,128	2,532,497	2,927,866	3,325,372
	2021	822,524	1,389,636	1,792,778	2,194,331	2,590,818	2,982,871	3,373,739
교육급여 (50%)	2020	878,597	1,495,990	1,935,289	2,374,587	2,813,886	3,253,184	3,694,858
	2021	913,916	1,544,040	1,991,975	2,438,145	2,878,687	3,314,302	3,748,599

장애인연금 주요 변경사항

구분	종전	변경
기초급여액 인상	●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30만원 ● 차상위 계층 30만원 ● 차상위초과자 254,760원	●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30만원 ● 차상위 계층 30만원 ● 차상위초과자 30만원

- **관련근거** : 「장애인연금법」제4조
- **시 행 일** : 2021. 1. 1.
- **소관부서** : 노인장애인과 (☎ 8024-3325)

맞춤형급여 선정기준 완화

- 자동차 기준 완화

현행		개정
● 승용 1600cc 미만이며, 10년 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 ● 승합·화물 1000cc 미만이며, 10년 이상 또는 150만원 미만	생계·의료	● 승용 1600cc 미만이며,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● 승합·화물 1000cc 미만이며,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
	주거·교육	● 승용 ① 2,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자동차 -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-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,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② 가구원이 6인 이상 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, 2,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,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● 승합·화물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제2조 [별표 1]의 소형 이하 승합·화물자동차로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

- **관련근거** :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(지침)
- **시 행 일** : 2021. 1. 1.
- **소관부서** : 사회복지과 (☎ 8024-3031)

기초연금 주요 변경사항

구분	종전			변경		
소득인정액 요건 (선정기준액변경)	구분	단독가구	부부가구	구분	단독가구	부부가구
	선정기준액	1,480,000원	2,368,000원	선정기준액	1,690,000원	2,704,000원
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연금액	소득하위 0~40% : 월 최대 30만원			소득하위 0~70% : 월 최대 30만원		

- **관련근거** : 「기초연금법」제2조, 제3조, 제5조
- **시 행 일** : 2021. 1. 1.
- **소관부서** : 노인장애인과 (☎ 8024-3122)

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

- **변경내용** :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연령 확대

종전	변경
- 만 17세가 될 때까지 지원(생일)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	-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(생일)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

- **관련근거** : 「입양특례법」제35조
- **시 행 일** : 2021. 1. 1.
- **소관부서** : 여성가족과 (☎ 8024-3094)

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

- 노인·한부모가족 수급[권]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
  - 수급(권)자 가구에 노인·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
  ※ 다만, 고소득(전 1억, 월 834만원)·고재산(금융재산 제외, 9억)기준 적용

주요 변경내용

1. 적용대상 요건
- 수급(권)자 가구 요건
  -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(권)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 포함한 해당 가구
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가구
  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(권)자 가구로,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
-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(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)
  - 소득기준 :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 이하인 경우
  - 재산기준 : 금융재산,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 재산, 일반재산,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

2. 적용대상 급여
- 기초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 (주거·교육급여 부양의무자 폐지)

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- **변경내용**
  -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양육보조금 매월 지급액 증액 지원
  - 신규 책정 가정위탁보호 아동에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(1회)

(단위 : 원)

구분	종전	변경
양육보조금	매월 200,000	매월 300,000
아동용품구입비	-	500,000(신규 책정 아동 1회 지급)

- **관련근거** : 「아동복지법」제59조(비용의 보조)
- **시 행 일** : 2021. 1. 1.
- **소관부서** : 여성가족과 (☎ 8024-3095)

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

- **대 상**
  -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
  -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 명 이상과 함께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된 가정
  - 2021년 지급대상 생년월일 : 2018. 7월 이후 출생자
- **지급기준**
  - 가구당 월 10만원 (현금 지급)
  - 해당 자녀가 36개월(생일이 속한 달)이 되는 달까지 지원
  - 36개월 이하 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 단가(10만원) 동일
    예) 세 자녀 중 1명의 자녀가 36개월 이하일 경우 지원액 → 월 10만원
    세 자녀 중 2명의 자녀가 36개월 이하일 경우 지원액 → 월 10만원
- **신청방법** 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- **관련근거** : 「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」
- **시 행 일** : 2021. 7월
- **소관부서** : 여성가족과 (☎ 8024-2933)

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
(단위 : 원)

구분	종전	변경
자립정착금	1회 / 5,000,000	1회 / 10,000,000

- **관련근거** : 「아동복지법」제38조(자립지원)
- **시 행 일** : 2021. 1. 1.
- **소관부서** : 여성가족과 (☎ 8024-3095)

보건 분야

경증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AI스피커 지원 사업

- **사업내용**
  - 평택시 등록된 경증치매 및 경도인지장애(MCI) 어르신 50명 대상
  - AI스피커를 지원하여 정서케어 및 건강관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어르신의 고독감 및 우울감을 해소
- **관련근거** : 「치매관리법」제3조 (국가 등의 의무)
- **시 행 일** : 2021. 1. 1.
- **소관부서** :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(☎ 8024-4397)

치매 검사비 지원 사업

- **변경내용** : 지원대상 확대

종전	변경
- 기준 중위소득 120% 이상인 자는 검사비 지원 불가	- 만 60세 이상 평택시민 중 기준중위소득 120% 이상인 자는 평택시 자체예산으로 검사비 지원

- **관련근거** : 「치매관리법」 제8조, 제9조, 치매정책지침 등
- **시 행 일** : 2021. 1. 1.
- **소관부서** :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(☎ 8024-4404, 7310)

치매 조호물품 지원 사업

항목	종전	변경
조호물품	① 대소변 장애가 있는 재가 치매환자 - 주민등록상 평택시 주민 - 기저귀, 방수 매트 등 ※ 요양원입소자 불가(요양병원, 병원 가능) ② 신청기준 최대1년까지 지원하되, 20년 이전 등록자는 20년 12월까지 지원	①, ② 지원 사항 동일 ※ 추가 : 장기요양 1~3등급 계속 지원 - 기저귀, 방수매트 지급 - 예산에 따라 물품 변동가능

- **관련근거** : 「치매관리법 시행령」제8조 「평택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」
- **시 행 일** : 2021. 1. 1.
- **소관부서** :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(☎ 8024-4397, 7307)

환경·위생 분야

신규 식품영업자 집합교육 의무화

- **내 용** :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위생교육이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식품위생 교육은 반드시 집합교육으로 하도록 함.
- **관련근거** : 「식품위생법」제41조제6항
- **시 행 일** : 2021. 1. 1.
  ※ 코로나19 상황 지속됨에 따라 202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온라인 교육과 집합교육 병행 운영
- **소관부서** : 평 택 시 청 식품정책과(☎ 8024-3880-3883)
 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(☎ 8024-6350-6353)
 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(☎ 8024-8280-8282)

세정 분야

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준 변경

종전 내용	달라지는 내용	시행시기
●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-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: 10년 - 5천만원 미만의 지방세 : 5년	●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-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이상인 경우 : 10년 -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: 5년	2021. 1. 1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9조

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기간 변경

종전 내용	달라지는 내용	시행시기
●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- 세무조사를 마치면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.	●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- 세무조사를 마치면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.	2021. 1. 1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5조

고액·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

종전 내용	달라지는 내용	시행시기
● 체납처분의 위탁 - 〈신설〉	● 체납처분의 위탁 - 명단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고액·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	2021. 1. 1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9조의2신설